Ⅱ. 영업규범의 개관

1. 영국

가. 법적 근거

FSMA2000 제138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청(FSA)은 인가업자(authorised person)가 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청은 FSMA2000 제138조에 근거해서 "영업원칙(Principles for Business)"을 제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청은 동일한 규정에 근거해서 인가업자들의 행위에 위 영업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영업규범들을 제정하였다(COB 부칙 4).

나. 영업원칙

1) 의의

영업원칙(Principles for Businesses)은 현재의 규제체계 하에서 인가업자의 근본적 의무들에 대한 일반적 선언이다(PRIN 1.1.2).

2) 내용

영업원칙은 11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PRIN 2.1).

영업원칙 1(정직·공명: 인가업자는 정직·공명하게(with integrity)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영업원칙 2(선관주의: 인가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with due skill, care and diligence)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영업원칙 3(관리와 통제: 인가업자는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춤으

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영업원칙 4(재무건전성: 인가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영업원칙 5(영업행위: 인가업자는 영업행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원칙 6(소비자의 이익: 인가업자는 소비자(customer)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영업원칙 7(고객과의 의사소통: 인가업자는 고객(client)의 정보 수요에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영업원칙 8(이익상충: 인가업자는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원칙 9(소비자(신탁관계): 인가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

영업원칙 10(고객의 자산: 인가업자는 고객의 자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영업원칙 11(규제기관들과의 관계: 인가업자는 자신의 규제기관들을 개방적이고 협조적 자세로 대해야 하고, 금융감독청이 당연히 알기를 원하는 인가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청에게 적절하게 고지해야 한다).

3) 적용범위

영업원칙은 모든 인가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된다(PRIN 1.1.1). 또한, 영업원칙은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PRIN 1.1.3). 그래서, 투자적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이하 '투자생명보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생명보험적 요소가 있는 순수보장보험(pure protection contract: '이하 순수보장보험'), 재보험업, 예금의 수취, 전자화폐의 발행 등에 대해서는 영업원칙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PRIN 1.1.3). 즉, 영업원칙의 위반이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서 금융체계에 대한 신뢰, 인가업자의 적정성(fitness and propriety), 또는 인가업자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청이 규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PRIN 1.1.3)[5]. 다만,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예금의 수취[6], 일반보험[7], 순수보장보험 등이 해당 된다[8].

그런데, 손해보험 및 순수보장보험, 즉 비투자보험(non-investment insurance)에 대해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즉, 금융감독청이 비투자보험에 영업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비투자보험영업규범(ICOB)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영국이 EU지침 중 하나인 보험중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을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더 이상 비투자보험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수 없기 때문이다.[9] 그 결과, 모든 보험에 영업원칙이 적용되며, 다만 구체적 내용면에서는 투자생명보험과 비투자보험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

5) FSA, "The FSA Principles for Businesses", A Consultation Paper, Sept. 1998.
6) British Bankers' Association/ Building Societies Association Code of Conduct for the Advertising of Interest Bearing Accounts.
7) The 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 Code.
8) The ABI, Life Insurance(Non Investment Business) Selling Code of Practice.
9) FSA, "Mortgage and General Insurance Regulation ~ What's Changing?", Factsheet 2, 2003, p. 2.

다. 영업규범

1) 의의

영업규범(Code of Business)이란 영업원칙을 인가업자들의 행위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규정의 전체이다.

영업규범에는 현재 세 가지가 있다. 즉, 모든 규제금융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영업규범(COB), 비투자보험에 적용되는 비투자보험영업규범(ICOB), 모기지에 적용되는 모기지영업규범(Mortgages(Code of Business: MCOB))이다.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을 고려할 때 주 연구대상이 COB, ICOB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COB는, 인가업자(firm)가 투자(investments)에 관한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 그 중에서도 지정투자업(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영업에 관한 규범이다. 한편, ICOB란, 보험업자(insurer) 또는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가 비투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또는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영업에 관한 규범이다.

2) 구성

COB는 12개의 장(chapter)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적용범위에 대한 일반규정
제2장 모든 인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금융광고
제4장 소비자를 받아들이기(accepting customers)
제5장 권유와 판매
제6장 상품고지 등
제7장 거래 및 관리(dealing and managing)
제8장 소비자에 대한 보고

제9장 고객 자산
제10장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
제11장 수탁자 및 수탁행위
제12장 로이즈

ICOB는 8개의 장(chapter)과 6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적용 및 목적
제2장 일반 규정
제3장 금융광고
제4장 권유와 판매 기준
제5장 상품고지
제6장 취소
제7장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
제8장 소매소비자와의 격지자간 비투자보험 매개계약

3) 영업규범에 관련된 주요 개념

가) 필요성

COB와 ICOB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가업자, 투자, 규제금융행위, 지정투자업, 보험매개자, 보험매개행위를 비롯한 기타 주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나) 인가업자

(1) 개념

인가업자(firm authorised person)란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FSA의 인가를 받은 자이다. 여기서 자(person)는 자연인, 단체(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자(person)는 개인(individual)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인가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면제업자(exempt person)가 있다. 면제업자는 규제금융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FSA의 인가가 면제된자로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FSMA2000 제39조(1)), 공인투자거래소(FSMA2000 제285조(1), 공인청산소(FSMA2000 제285조(3)) 그리고 면제명령에 의해서 면제된 자(FSMA2000 제38조(1)) 등이 포함된다. 면제업자는 규제금융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가업자와 동일하지만, 영업규범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가업자와 다르다.

인가업자 또는 면제업자가 아닌 자가 규제금융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첫째 2년 이하의 징역 및 무제한(unlimited)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되며(FSMA2000 제23조), 둘째 해당 거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한편, 상대방은 거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FSMA2000 제26조).

(2) 요건

(가) 인가(authorisation)

인가업자는 FSMA2000 제31조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첫째,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를 수행할 허가(permission)를 FSMA2000의 요건에 의거해서 획득한 자이다. 둘째, 진입EEA인가업자(incoming EEA firm)이다. 이는 EEA의 인가업자로서 영국에서 규제금융행위를 영위할 권한을 행사했거나 행사 중인 자를 가리킨다. EEA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이다. 셋째, 진입조약인가업자(incoming Treaty firm)이다. 이는 FSMA2000 부칙 4의 조약상 권리에 근거해서 영국에서 규제금융행위를 영위할 권한을 행사했거나 행사 중인 자를 가리킨다. 넷째, UCITS자격자(qualifier)이다. 이는 일정기간 기

구(scheme)의 운용자, 수탁자, 또는 수취인(depositary)이면서 FSMA2000의 부칙 1(1)에 따라 인가업자로 된 자를 가리킨다. 다섯째, 가변자본투자회사(ICVC: investment company with variable capital)이다. 여섯째, 로이즈(the Society of Lloyd's)이다.

인가업자 중에는 전문업인가업자(authorised professional firm)가 포함된다. 전문업인가업자란 전문업자 중에서 FSMA2000의 요건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자이다. 전문업자란 회계사, 변호사 및 계리사 등을 가리킨다. 이들이 규제금융행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면 FSMA2000의 요건에 의거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들에게 FSMA2000의 영업규범이 적용된다. 한편, 이들이 규제금융행위를 자신들의 주 목적인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SMA2000의 요건에 따른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지정전문가기관(designated professional body), 예를 들면 회계사의 경우 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가 담당하게 되고, 그 결과 FSMA2000의 영업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허가(permission)

인가업자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가업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가업자는 특정한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영업으로(by way of business) 수행함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이다(FSMA2000 제22조(1)).

따라서 만약 인가업자가 허가받은 특정한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 이외의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허가 없이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으로 됨은 물론이다. 다만, 인가업자이지만 허가없이 특정한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한 자에 대한 제재는 손해배상책임에 그치기 때문에(FSMA2000 제20조(3)), 인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에 비해서 경미하다.

다)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

① Order 2001

투자(investments) 및 규제금융행위(regulated activities)에 대한 구체적 규정으로는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이하 'Order 2001')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를 때,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의 개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는 규제금융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며,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a)예금, (b)보험계약, (c)주식 등, (d)부채증서, (e)국공채, (f)투자에 대한 권리부여문서, (g)특정증권표시증서(certificate representing certain securities), (h)집합투자기구상 권리, (i)저소득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상 권리, (j)옵션, (k)선물, (l)차익수수계약 등, (m)Lloyd's 신디케이트 자격과 신디케이트 회원자격, (n)장의계획계약(funeral plan contracts), (o)규제모기지계약(regulated mortgage contracts), (p)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 등이다.

규제금융행위란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a)예금의 수취, (aa)전자화폐의 발행, (b)보험계약의 체결, (c)보험계약의 유지, (d)본인으로서 투자 거래, (e)대리인으로서 투자 거래, (f)투자 거래의 중개(arranging), (g)투자에 관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h)투자에 대한 관리(managing), (i)투자의 보관과 관리(administration), (j)비물질화된(dematerialised) 지시의 송부, (k)비물질화된 지시가 송부되도록 하는 행위, (l)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또는 청산, (m)인가유닛신탁기구의 수탁자로서 행위, (n)비제한투자회사(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受置人 또는 일인이사로서 행위, (o)저소득층국민연금의 설립, 운용 또는 청산, (p)투자에 대한 조언, (q)로이즈 신디케이트 참여에 대한 조언, (r)로이즈에서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으로서 로이즈 신디케이

트의 인수자격을 관리하기, (s)로이즈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중개, (t)공급자(provider)로서 장의계획계약(funeral plan contracts)을 체결하기, (u)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제금융행위에는 (a)보험계약의 체결, (c)보험계약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즉 보험업자(insurer)는 FSMA2000에 따라서 인가업자로 되어야만 한다. 한편,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즉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e)대리인으로서 투자 거래, (f)투자거래의 중개, (g)투자에 관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p)투자에 대한 조언, (u)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하는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도 인가업자로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Order 2001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매개행위의 대상인 투자에 보험 중에서는 투자생명보험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보험의 매개행위를 행하는 보험매개자는 인가업자로 될 필요가 없다.

② Order (No. 2) 2003

규제금융행위의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Order 2001은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1 (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No. 2) Order 2003(이하 'Order (No. 2) 2003')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즉, Order (No. 2) 2003에 의하면, (e)대리인으로서 투자 거래, (f)투자 거래의 중개, (g)투자에 관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 (p)투자에 대한 조언, (u)규제금융행위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인 투자에 투자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또한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보조하는 행위가 보험매개행위로서 새로이 추가되었다.

요컨대, Order (No. 2) 2003이 시행되면, 모든 보험매개행위가 FSMA2000의 규제금융행위로 된다. Order (No. 2) 2003은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과 관련해서는 2004년 10월 31일부터, 기타

보험과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라) 지정투자 및 지정금융행위의 개념

(1) 필요성

투자 및 규제금융행위 중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되어 제한된 것으로서, 지정투자(designated investments)와 지정투자업(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이 있다. 그러한 일정한 목적으로는 COB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즉, 대부분의 COB 규정은 이러한 지정투자 및 지정투자업에만 적용된다.

(2) 지정투자

지정투자란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a)투자생명보험, (b)주식, (c)사채, (d)국공채, (e)워런트(warrant), (f)특정증권표시증권, (g)유닛(unit), (h)저소득층국민연금, (i)옵션, (j)선물, (k)차액수수계약, (l)(a)에서 (k)까지의 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 등이다.

(3) 지정투자업

지정투자업이란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a)본인으로서 투자를 거래, (b)대리인으로서 투자를 거래, (c)지정투자에 관한 거래를 처리, (d)지정투자에 관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 (e)지정투자에 대한 관리(managing), (f)지정투자를 보관하고 관리(administration), (g)비물질화된(dematerialised) 지시의 송부, (h)비물질화된 지시가 송부되도록 하는 행위, (i)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또는 청산, (j)인가유닛신탁기구의 수탁자로서 행위, (k)비제한투자회사(open ended investment company)의 受置人 또는 일인이사로서 행위, (l)저소득층국민연금의 설립, 운용 또는 청산, (m)지정투자에 대한 조언, (n)(a)에서 (h) 및 (m)상의 행위를 수행

하기로 한 합의 등이다.

(4) 보험계약, 보험매개행위

지정투자는 보험 중 투자생명보험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COB 규정은 투자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마)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활동하는 자

(1) 의의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활동하는 자가 다수 존재한다. 투자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 보험매개보조자로 구분할 수 있다. Order (No. 2) 2003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구분은 투자생명보험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즉, 그것이 실행되기 이전에, 손해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기준위원회(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에 의한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가 적용된다. 또한, 순수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Order (No. 2) 2003이 곧 실행되므로, 이하에서는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활동하는 자를 보험매개자, 선임대리인, 보험매개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험매개자

보험매개자는 보험매개행위(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로 인가업자만이 될 수 있다. 보험매개자에게는 영업원칙(Principles for Businesses)과 영업규범이 직접 적용된다. 보험매개자로서 인가받을 수 있는 자에는 자연인, 단체(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가 모두 포함되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보험업자(insurer)가 포함될 수도 있다.

특수한 보험매개자로서 로이즈에서 보험매개행위를 하는 자인 관리대리인(managing agent)이 있다. 관리대리인은 다음의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대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일정한 행위란 (a)로이즈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행위, (b)그러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재보험의 인수를 하는 행위, (c) 그러한 계약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3) 선임대리인

보험매개자가 수행하는 보험매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선임대리인(FSMA2000 제39조(1))이 있다. 선임대리인은 면제업자(exempt pers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청(FSA)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보험매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선임대리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보험매개행위를 수행할 있는 인가업자와 선임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을 통해서 인가업자는 선임대리인이 보험매개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선임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업원칙, 영업규범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인가업자가 선임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4) 보험매개보조자

이상의 보험매개자, 선임대리인은 아니지만, 그밖에 보험의 판매과정에서 활동하는 자가 존재한다. 편의상 이들을 보험매개보조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보험매개자 및 선임대리인의 피용자(employee), 대리인(representative) 등이 바로 보험매개보조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FSMA2000 하의 각종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다. 해당 보험매개자, 선임대리인이 보험매개보조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바) 기타 관련 개념

(1) 전문가간투자, 전문가간투자업

전문가간투자(inter-professional investment), 전문가간투자업(inter-professional investment business)에는 COB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COB 1.3.4). 인가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금융거래에 대한 영업규범과 인가업자와 전문가 사이의 금융거래에 대한 영업규범의 수준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인가업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간투자란 (a)주식, (b)사채, (c)국공채, (d)워런트(warrant), (e)특정증권표시증서, (f)옵션, (g)선물, (h)차익수수계약, (i)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 등이다.

전문가간투자업이란, 인가업자가 (a)본인으로서 투자를 거래, (b)대리인으로서 투자를 거래, (c)중개인(arranger)으로서 행위 또는 (d)거래특정적(tranaction specific) 조언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데 합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투자가 전문가간투자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시장상대방(market counterparty)과 또는 그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일괄상품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투자를 가리킨다. 첫째, 투자생명보험, 둘째 규제간접투자기구상의 권리(a unit in a regulat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셋째 투자신탁저축기구상의 권리(an interest in an investment trust savings scheme), 넷째 저소득층국민연금(stakeholder pension scheme) 등이다.

일괄상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지위이분법(polarisation rule)에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고지해야 한다. 즉, 일괄상품의 구입을 권유하는 자는 전속대리인(tied agent)과 독립매개자(independent intermediary)의 지위를 병행할 수는 없고 그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해야만 하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관계자

COB 규정 중에는 인가업자와 더불어 그 관계자(associate)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관계자란, 인가업자의 계열회사(affiliated company), 인가업자 및 그 계열회사의 선임대리인, 또는 인가업자 및 그의 관계자와 사업적 또는 가사적(domestic) 관계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이익상충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를 가리킨다.

(4) 기구

COB 규정 중에는 기구(scheme)에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기구란, 규제집합투자기구(regulat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일정한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을 가리킨다. COB 10과 관련해서 기구란, 미규제(unregulated) 집합투자기구까지도 포함한다.

(5) 격지자간 계약

비투자보험에 적용되는 영업규범인 ICOB는 격지자간계약(distance contract)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비투자보험에 관한 격지판매지침(Distance Marketing Directive)이 처음 채용했던 개념이다. ICOB 1.7.3(1)는 격지자간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격지자간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의 체결시 및 그 이전까지

격지자간 통신수단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역무의 제공자에 의해서 "조직화된 격지자간 판매 및 역무 제공 제도"(organised distance sales or services provision scheme) 하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소매소비자가 격지에서 오로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오직 이 시설에 의존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격지자간계약으로 취급되고 ICOB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그러한 시설이 없거나, 특별히 우연적 또는 응급적 필요에 의해서 일회적으로 그러한 격지자간 통신수단이 사용된 경우에는 격지자간계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둘째,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매소비자와 보험매개자 등 사이에 동시적, 물리적 존재(simultaneous physical presence), 즉 서로의 직접적 대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6) 보전적 수단

COB나 ICOB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보전적 수단(durable medium)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보전적 수단이란, 정보가 수령자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어 저장됨(stored)으로써 미래에 다시 조회할 수 있고 그대로 재생될(reproduced)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지면, 플로피 디스크, CO~ROM, DVD,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Handbook Glossary 부칙 4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거래에 관한 영업규범은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의 금융거래라도 금융업종, 금융기관이 다르면 적용되는 영업규범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규제의 비효율,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행위규제의 法源

도 일정하지 않다. 즉, 영업규범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중 어느 형식으로 존재하느냐가 금융업종, 금융기관별로 일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규제의 비효율,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은 물론이다.

재정경제부가 통합금융업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 중 영업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19개이다. 즉,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등이다.